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1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유건영 • 박지원 • 채현일

김원이 · 김승원 · 한병도

박해철 · 서미화 · 임호선

문금주 · 장종태 · 황명선

양부남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책임자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

제110조제2항 중 "前項의 責任者는"을 "제1항의 책임자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낙을 하여야 할 자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 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 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단서 ----. 다만. 책임 신설> 자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 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 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 ②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 ②제1항의 책임자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 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 한다.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①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 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當該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 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 公署의 承諾 없이는 押收하지 ----. 다만, 승낙을 하여야 못한다. <단서 신설> 할 자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 거<u>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u>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
	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가진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